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 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3. 5. 27

도 시 위 원 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1. 9. 26 -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1. 9. 26

다. 상정일자 : 제2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3. 5.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김승중)

가. 제안이유 : 투자 규모가 크고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이므로 이 사업을 통한 수입과 비용을 명확히 정산할 필요가 있고 한시적 특별회계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업종료후 사업투자비의 수지분석이 용이함.

나. 주요골자 : 민간자본을 도입 시행하고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사업의 범위와 시행, 민간투자자 선정, 투자비 상환, 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공무원 지정 등을 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김백수 전문위원)

- 사업의 중요목적이 공영개발 수익사업보다 신평, 장림 침수해소 대책으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에 우선을 두어야 하며
- 도심지 속에서 각종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사업은 필요불가결하며,
- 사업시행에 따른 상호협약서와 민간투자자 선정, 투자비 상환 등 시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1문1답식으로 진행)

○ 박원갑위원(질의)

유수지이설에 대한 고지배수로, 계획도로 등에 대한 사업개요와 사업비 산출에 따른 문제와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그리고 해당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정에 있어 상업, 주거지역을 일부 지정하는 사항과 사업기간이 '96년 12월까지 실시 종료 가능한지와 아울러 민간투자자 선정에 있어 희망자가 없을 때 조치 계획은 무엇이며, 기존 유수지 각종 장비 재사용 계획은?

○ 김승중 도시국장(답변)

사업비 추산이 물가상승 등을 감안 583억6,000만원으로 잠정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발주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사업비는 2개월 후에 알 수 있으며, 교통체증 문제는 착공전에 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용도지역 문제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 상업, 주거지역을 일부 가미하는 준공업지역으로 부산시에 이미 건의한 바 있어 7월 중에 부산시 재정비 계획 결과에 따라 조치될 사항이며, 현재 시점으로 보아 사업비 164억 정도가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향후 사업비를 지원받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이의 결과 추이에 따라 계획공정내 공사종료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사업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때 고지배수로, 계획도로 부분 공사는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등 별도 검토가 수반될 사항이며, 민간 투자자 선정문제는 많은 참고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세부규칙으로 정하여 협약서안 등 구체적으로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물론 수시로 보고도 하겠음.

기존 유수지 장비 재사용 문제는 기존 유수지 8대 기계 중 800마력 2대는 이설 후 재사용할 계획임.

○ 구본춘위원(질의)

본 조례가 지난 '91년 의회에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다른 사항이 없는지와 기존 펌프장은 현 상태로 봐서 언제까지 가동할 수 있는지 아울러 전체 교체 문제 등 상태변화 전망은?

유수지이설 사업과 관련 전담 조직기구가 필요하여 거론된 바 있는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투자자 응모시 미리 구조정 위원회 회의에서 시행방침 등을 정할 것인데 규정이나 성격은 어떤 것이며, 피해보상과 관련 어떤피해 사항은 수산대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20m 계획도로 고지배수로 설치 부분에 편입되는 주민에 대하여는 피해용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 김승중 도시국장(답변)

현재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의회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 점검해 본 결과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으며, 현 펌프장 시설 상태는 본 이설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몇 년안에 장비 및 시설노후로 전체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며, 구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임.

조직기구 문제는 정부 조직축소 방침에 따라 신설은 어려울 것이며, 현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 구청 조직내에서 기획감사실과 협의, 인원 보강을 할 예정임.

본사업과 관련 구조정위원회 성격은 공통적인 시행방침과 공사중 법적인 문제 등을 토의 조정할 성격을 가질 것이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보상문제는 사전 충분한 협의에 의거 추진하고 본 사업재원 이익발생 등은 지역주민에게 재투자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임.

○ 이석래위원(질의)

60억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이자부담을 감당할 문제와 유수지 앞 계류장에 펌핑으로 인한 어선 접촉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 대책과 부지조성 후 일부 윗부분을 활용하면 300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종합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 김승중 도시국장(답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협의에 의거 타결 보상시점에서 적시 적기에 필요한 부분만 선수금을 받는 등 여러가지 선수금 납부방법에 의거 이자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어선 피해사고 문제 등은 수산대 용역 결과 보고서에 거론된 바 있으나 사업추진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지적한 것도 있어 향후 시행 단계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주차장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 5. 27 구본춘위원

나. 수정이유 : 투자자 선정과정, 공사방법, 협약사항, 보상의 시기 등 여러가지 세부사항을 규정할 규칙제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조례안 제13조 신설

다. 수정주요골자 :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찬성 7, 기권 1)